해외직구 식물검역 대상물품 검역 안내문

1. 해외직구 농산물, 씨앗, 생과실 등 식물검역대상물품 검역 안내

○ **식물검역대상물품은 검역본부에 신고**하여 검역을 받아야 함

* 식물검역대상물품(목록통관 배제품목): 씨앗(종자), 묘목(접수·삽수 포함), 구근, 곡물, 과일, 채소, 향신료, 한약재, 목재, 흙, 병해충(애완용 곤충 포함) 등

○ 씨앗, 묘목, 구근 등의 **재식용 식물은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**하여야 함

○ **흙, 병해충**과 **과일, 호두 등 금지식물**은 수입할 수 없음

2.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국제 우편물·특송품을 수취한 경우(검역필 스티커, 검역테잎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)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

○ 공산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일부 포함된 경우 식물방역법 제2조,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식물검역 대상에 해당

* 식물검역대상물품 여부가 궁금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

3. 재식용식물 중 기준수량 이하로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식물검역증명서(Phytosanitary Certificate) 첨부 면제

* 사전승인 절차는 아래 홈페이지-알림마당-동식물 해외직구 자료실 1번 글 참조

< 위반시 처분사항 >

☞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**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**(식물방역법 제47조)

☞ 탁송품 운송업자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**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품을 배송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**(식물방역법 제50조)

위 내용에 대한 문의 및 세부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(☎ 054-912-0616) 또는 **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**(www.qia.go.kr) 알림마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